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6. 2.

발의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

□ 개정사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(1995. 12. 30. 대통령령 제14,877호) 및
국내여비규정의 개정 (1995. 12. 29. 대통령령 제14,857호)으로 의원에게
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
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
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
-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회의수당
을 지급토록 함.
-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 (20,700원 → 37,500원) 및
식비 (11,000원 → 25,000원)를 상향 조정함.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, 『별표 5』
- 국내여비규정 『별표 2』

□ 기타 참고자료

충청북도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 조례(안) 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회의수당지급) 중 “회의수당을” 을 “회의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을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

제7조 (회의수당지급기준)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(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)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, 별표 1 “국내여비지급기준표”에 의한 교통운임 (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) · 숙박비 및 식비(3분의 1) 범위이내에서 지급한다.

③ 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.

【별표 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숙 박 비 (1 야 당)	식 비 (1 일 당)
의장 · 부의장	37,500	25,000
의 원	37,500	25,000

【별표 3】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3】

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

(단위 : km)

시 · 군별	대 상 지 역			
충 주 시	동일원(71.0), 상모면(80.7), 살미면(71.7), 소태면(94.8), 엄정면(85.8), 산척면(85.8), 동량면(81.8), 금가면(83.8), 가금면(81.8), 앙성면(77.8), 노은면(69.8), 신니면(63.8)			
제 천 시	동일원(118.9), 봉양읍(109.2), 백운면(120.9), 송학면(129.0), 청풍면(129.7), 금성면(130.2), 수산면(116.0), 한수면(124.7), 덕산면(109.4)			
보 은 군	산외면(64.3), 외속리면(63.2), 내속리면(66.1), 삼승면(66.1), 탄부면(67.2), 마로면(70.1)			
옥 천 군	동이면(63.4), 안남면(74.2), 안내면(72.1), 청성면(75.8), 청산면(77.5), 이원면(64.6), 군서면(60.6)			
영 동 군	영동읍(83.4), 용산면(87.2), 황간면(100.0), 추풍령면(108.0), 매곡면(104.9), 상촌면(110.7), 양강면(87.4), 용화면(113.4), 학산면(97.7), 양산면(100.9), 심천면(74.0)			
괴 산 군	장연면(65.6), 연풍면(70.4), 불정면(62.2)			
음 성 군	생곡면(60.5), 감곡면(71.6)			
단 양 군	단양읍(143.5), 배포읍(155.6), 단성면(154.7), 대강면(155.4), 가곡면(150.7), 영춘면(164.4), 어상천면(164.8), 적성면(168.6)			